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2023. 9. 21.

사회건설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9월 6일

나. 발 의 자: 이성수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3년 9월 14일

라. 상정일자: 제24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9. 18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성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지자체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수립, 사업의 기획·운영 단계에 건축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건축 및 도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, 디자인 업무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-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에 관한 규정(안 제3조 및 제4조)
- 건축 민간전문가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(안 제7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경진)

- 본 조례안은
  - 지자체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수립, 사업의 기획·운영 단계에 건축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건축 및 도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, 디자인 업무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 - 제명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」 이고 9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,
  -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,
  - 안 제3조에서는 총괄건축가의 위촉 및 업무범위,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 등 총괄건축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  - 안 제4조에서는 공공건축가의 위촉 및 업무범위를 규정하였고,
  -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청렴성 유지와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,
  - 안 제7조에서는 민간전문가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,
  -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각각 수당 및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- 검토 결과
  - 우리 구는 「건축기본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올해 2월부터 건축 민간전문가로 총괄건축가를 위촉하여 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.
  - 이에 따라 건축 민간전문가의 임기, 업무범위, 준수사항, 제척·기피·회피·해촉 및 수당 등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 민간전문가

## 참여에 관한 조례안

(이성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3. 9. .

발 의 자: 이성수, 유승용, 이순우  
· 우경란 의원(4인)

### 1. 제안이유

지자체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수립, 사업의 기획·운영 단계에 건축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건축 및 도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, 디자인 업무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에 관한 규정(안 제3조 및 제4조)

다. 건축 민간전문가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(안 제7조)

### 3. 제정안 : “별첨”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축기본법」, 「건축기본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기반영

다. 입법예고(2023. 9. 5. ~ 2023. 9.10.)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건축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 민간전문가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민간전문가”란 「건축기본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업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자로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로 구분한다.
2. “총괄건축가”란 행정구역 및 사업구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의 기획·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·조정 등 건축·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.
3. “공공건축가”란 개별 건축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,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.
4. “관리부서”란 민간전문가의 활동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의 건축담당 부서를 말한다.
5. “사업부서”란 공공건축, 공공사업 등의 사업을 전담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의 관련 부서를 말한다.

제3조(총괄건축가 운영 등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건축기본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총괄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.

②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③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영등포구”라 한다)의 공공건축, 도시환경 개선 관련 주요사업 및 정책 검토

2. 영등포구의 공공건축 사업부서 간 협력 및 조율

3. 영등포구의 공공건축, 공공사업 발주방식 검토 지원

4. 영등포구의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
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

④ 구청장은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 조직을 둘 수 있다.

⑤ 총괄건축가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의 기본방향 등 업무 처리 기준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해당 사업부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.

제4조(공공건축가 운영 등) ① 구청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.

② 공공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

할 수 있다.

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구청장이 발주하는 영등포구 공공건축물의 기획·설계·시공·유지 관리에 대한 조정·자문
2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등포구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

제5조(제척·기피·회피) ①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자문 등에서 제척된다.

1. 민간전문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업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민간전문가가 해당 업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민간전문가가 해당 업무에 대한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민간전문가 또는 민간전문가가 속한 법인이 해당 업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민간전문가에게 공정한 업무의 자문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당사자가 구청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구청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

③ 민간전문가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업무의 자문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6조(해촉) 구청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.

1. 건강상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 태만,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민간전문가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5.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

제7조(준수 사항) ①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.

② 민간전문가는 이해관계인과 일반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하며, 공무원 윤리강령에 준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③ 민간전문가는 관리부서 및 사업부서의 담당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,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강압적 태도와 지시를 지양하여야 한다.

제8조(수당 등)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민간전문가의 여비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

례」를 준용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민간전문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